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

기획위원회 회의통과 : 2023. 7. 6.

교무위원회 회의통과 : 2023. 7.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제27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프로그램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국제의료경영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교육과정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제3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책임자는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학과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은 제외한다.

③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예산 수립 및 집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프로그램 인증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
3. 인증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
4. 기타 인증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위원회,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운영위원회) ①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추진 기획 및 심의를 한다.

②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책임자, 학과의 전임교원, 외부위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가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행정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이수, 전입 및 이수포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 ①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혁신적 업무추진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②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책임자, 학과의 전임교원, 우리 대학 교육과정 담당 교직원, 외부위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가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학기당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성취도 조사 및 분석
2. 강의결과 분석 및 평가
3. 교육내용 및 방법,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평가분석 및 개선안 도출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분석 및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책임자, 학과의 전임교원과 산업체 전문가 중심으로 외부위원 비율 50%이 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책임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가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 ① 책임자 주관 하에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환류·보완을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단, 외부평가 시에는 책정된 평가수수료 경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와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시한다.

제3장 프로그램의 이수

제9조(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10조(프로그램의 소속) 다음 각호의 학생에게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 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2. 학과로 전입하는 학생
3. 타 대학에서 학과로 편입하는 학생

제11조(프로그램으로의 전입) ① 제10조 각호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이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1학년 1학기 1주차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 신청서 제출 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절차) ① 책임자는 제11조에 따른 이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이수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별표 3의 보건의료정보관리 동등성 인정 교과목에 대한 심의 및 동등성 인정 절차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프로그램 이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프로그램 이수 포기) ①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 비인증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년 최종학기 개시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이수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평가관리위원회에 이수포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수 포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수학점) ①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별표 2의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선·후수체계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1의 필수이수 교과목 및 특성화 선택이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지정된 선후수체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후수교과목 담당교수에 후수교과목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수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편입 첫 학기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수업설계를 하고, 미준수 사유를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에 안내하여 후수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은 3주 1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 여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우리 대학 학과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교내 현장실습으로도 이수 가능하며, 최종성과의 성취도는 학과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인증심사) ① 프로그램 이수 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충족여부 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 학교 및 학과의 졸업사정을 통과하고, 제14조에서 정한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만족하여 제16조의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각 교과과정 영역의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프

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신입생 등은 본 프로그램 이수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편성표(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인정 학점	개설 학기	실습과목 여부
		이론	실습			
필수 이수	보건의료정보관리학	3		3	2-1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3	3	4-1	실습
	보건의료조직	3		3	2-1	
	건강정보보호	2		2	2-1	
	질병및의료행위분류		3	3	3-1	실습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3	3	3-2	실습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1	1	4-2	실습
	암등록		2	2	4-1	실습
	의료의질관리	2		2	3-2	
	건강보험이론및실무		2	2	3-2	실습
	보건의료통계		3	3	1-2	실습
	보건의료데이터관리		3	3	3-1	실습
	의료정보기술	2		2	2-2	
	의료관계법규	2		2	3-2	
	의학용어	3		3	2-1	
	병리학개론	2		2	2-1	
	해부생리학	3		3	1-2	
	현장실습		3	3	3-1, 3-2	실습
총계				45		
선택 이수	조사방법론(캡스톤디자인)	3		3	4-1	
	의료경영학	3		3	1-1	
	보건행정학	3		3	1-2	
	공중보건학	3		3	2-2	
	총계				12	

[별표 2]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선·후수 체계(제14조제1항 관련)

선수 교과목명				후수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2	해부생리학	→	3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3	2	의무기록 정보분석 실무
				3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4	1	암등록
				4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2	1	병리학개론	→	3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3	2	의무기록 정보분석 실무
				3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4	1	암등록
				4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2	1	의학용어	→	3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3	2	의무기록 정보분석 실무
				3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4	1	암등록
				4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2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4	1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3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	4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별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동등성 인정 교과목(제12조제1항 관련)

현행(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	법 개정 전(의무기록관련 이수교과목)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의료보험
2. 건강정보보호	-
3. 병리학	병리학개론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의료정보관리학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학
7. 보건의료조직관리	-
8. 보건의료통계	병원통계
9. 암등록	암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의료관계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적정진료보장
12. 의료정보기술	전산학
13.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의무기록실습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
15. 의학용어	의학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질병 및 수술분류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18. 현장실습	-
-	의무기록전사
-	공중보건학개론

[별지 제3호서식]

제000000000호

이 수 증 명 서

000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학칙 제27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인정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소속: 바이오메디대학 국제의료경영학과

0000년 00년 0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인)